여비 규정

제정 1999. 10. 01. 개정 2006. 04. 01. 개정 2018. 10. 22. 개정 2001. 10. 01. 개정 2013. 09. 30. 개정 2019. 02. 13. 개정 2002. 03. 01. 전문개정 2015. 12. 28. 개정 2022. 12. 28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 교·직원이 공무로 국내·외에 출장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경비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0. 22, 2022. 12. 28.>
- 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의 교·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.
 - 1. 대학을 대표하는 각종 교육, 회의, 견학 등의 행사 참석
 - 2. 기타 대학의 행정업무 수행 <개정 2018. 10. 22.>
- 제3조(공무의 인정기준) 교·직원이 공무로 국내·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출장신청서 또는 국외공무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개정 2018. 10. 22, 2022. 12. 28.>

제2장 국내여비

- 제4조(여비의 종류) 여비는 운임(교통비), 일비, 숙박료,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.
- 제5조(여비의 지급 기준) 국내여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되,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여비는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을 참고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정한다. <개정 2018. 10. 22.>
- 제6조(여비의 계산)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출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출장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. <개정 2018. 10. 22.>
- 제7조(출장일수의 계산) 출장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. 다만, 출장 중에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늘어나는 일수는 출장일수에 포함될 수 있다. <개정 2018. 10. 22.>
- **제8조**(여비의 지급) ① 여비의 지급시기는 출장일이 속한 해당 월의 익월에 지급한다. <개정 2018. 10. 22.>
 - ② 특수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른 여비로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0. 22.>
 - ③ 결재를 득한 출장신청서에 기재된 시간에 근거하여 1일 식비를 3등분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0. 22.>

사무처 총무팀

- ④ 숙박비 및 식사를 제공받는 출장의 경우에는 일비를 출장일수와 무관하게 1일분만 지급한다. <개정 2018, 10, 22, 2022, 12, 28.>
- ⑤ 4시간 이하의 수도권 출장일 경우에는 유임(교통비)만 지급한다. <신설 2019. 2. 13.>
- 제9조(여비지급의 제한) ① 각종 행사, 교육, 시찰 및 회의 참석 시 여비는 주최 측의 세목별 여비 부담내역을 참조하여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 학생활동 지도에 따르는 출장 시 여비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18. 10. 22.>
 - ③ 수학여행, 산업시찰, 견학 및 교외 실습(현장수업)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단.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는 제외로 한다. <개정 2018. 10. 22.>
 - ④ 총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⑤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미제출 시에는 여비의 지급을 제한한다.

<신설 2018. 10. 22.><개정 2022. 12. 28.>

제3장 국외여비

제10조(지급기준) ① 국외여비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되,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여비는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을 참고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정한다.

<개정 2018. 10. 22.>

- ② 총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국외공무출장보고서 미제출 시에는 여비의 지급을 제한한다.

<신설 2018. 10. 22.><개정 2022. 12. 28.>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사무처 총무팀 3-3-6 여비 규정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국내여비 지급표 <개정 2018. 10. 22.>

국내 여비 지급표

(단위 : 원)

교 통 비								스미크	식비
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	자동차운임				숙박료	(1일당)
KTX	정액	실비	구분	대중교통 이용시	자기차량 이용시	대학 공용차량 이용시			
			수도권	10,000		0	20,000	실비	25,000 (1식당 8,500원)
			그외지역	정액		0			

<비고> 1. 철도운임은 등급에 상관없이 KTX 기준으로 운임을 지급한다. <개정 2018. 10. 22.>

- 2. 선박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0. 22.>
- 3. 항공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, 이코노미석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 <신설 2018. 10. 22.>
- 4.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0. 22.>
- 5. 자동차운임 구분의 수도권은 서울, 경기, 인천지역을 말한다. <신설 2018. 10. 22.>
- 6.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 <개정 2018. 10. 22.>
- 7. 숙박료는 출장에 한하여 실비로 지급하되, 상한액(서울 : 7만원, 광역시 : 6만원, 기타지역 : 5만원)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 <신설 2018. 10. 22.>

【별표 2】국외여비 지급표 <개정 2018. 10. 22, 2022. 12. 28.>

국외여비 지급표

항공료	일비	숙박료	식비
실비	공무원 여비규정 준용		

<비고> 1. 국외 현지에서 교통비 및 기타잡비는 일비로 충당한다.

2.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하되, 이코노미석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